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20나52353(본소), 2020나52360(반소)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제갈헌

변 론 종 결 2022. 1. 7.

판 결 선 고 2022. 3. 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8120(본소), 2019가 단32772(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0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0행, 제4면 제3, 5행, 제6면 제14, 15, 20행의 ‘I’ 또는 ‘O’을 ‘P’로 고치고, 제4면 제1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은’을 ‘이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치고, 제5면 제6행의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갑 제13호증의 1, 2(통화녹음파일)의 음성’으로 고치고, 제6면 제11행의 ‘피고의 위 항변’을 ‘원고의 위 항변’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